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72925, 2020가단3905(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 고 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6. 1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8. 1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8. 12. 31. 접수 제26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2019. 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2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E은 2016. 2.경 피고 B와 F, G를 사기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소하였다. E과 피고 B, F, G는 2016. 3. 28. 위 고소 사건 관련하여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B와 F, G가 E에게 195,774,820원을 2016. 9. 30.까지 반환한다는 등의 기재가 있다.

나. 이 사건 합의서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E은 피고 B, A, G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7. 9. 12. 피고 B, A, G는 공동하여 E에게 195,774,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약정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약정금 판결에 대하여 피고 B, A이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8. 6. 15. 피고 B, A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약정금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A은 2019. 3. 7. E과 사이에 약정금 판결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260,000,000원(지연손해금 일부 감액)으로 정하고, E에게 그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5. 24.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2. 26. 증여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8. 12. 31. 접수 제261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은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 29.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20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B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13,654,600원이었고, 피고 B은 여수시 H 도로 209㎡ 중 1/2 지분(시가 2,508,000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제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 J)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약정금 판결에 따라 피고 B, A, G가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연대채무이고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약정금 판결에 따른 연대채무 중 6,000만 원을 채권자 E에게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 B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처분하기 이전인 2016. 3. 28.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2017. 9. 12. 약정금 판결이 선고된 사실, A이 약정금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E에게 2019. 3. 7. 20,000,000원, 2019. 5. 24. 4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 B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 처분행위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이외에 가진 적극재산은 시가 합계 13,654,6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시가 2,508,000원 상당의 여수시 H 도로 209㎡ 중 1/2 지분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20,000,000원이며,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이 가진 적극재산은 시가 합계 13,654,6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시가 2,508,000원 상당의 여수시 H 도로 209㎡ 중 1/2 지분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2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계약 및 매매 계약은 모두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증여 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부인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8. 8. 24. 여수시 K 과수원 8,962㎡를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증여한다는 취지의 부담부 증여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 B, C가 2019.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 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 C, D는 이 사건 증여 계약,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 계약 및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8. 12. 31. 접수 제26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2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목 록

1. 여수시 L 임야 20,472㎡ 중 19467/94657 지분(피고 C 명의)
2. 여수시 M 임야 826㎡
3. 여수시 N 전 89㎡
4. 여수시 O 도로 169㎡. 끝.